

2026

소방공무원법, 위험물관리법 소방승진 소방법령4

엠북 소방

공부혁명!
mbook.kr

- ★ PDF 전자책
-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종합
- ★ 최근 법령 개정 및 신설 내용 반영
- ★ 4시간 10분 완성, 암기코드 제공

도서명 : 소방승진 소방법령4

ISBN : 979-11-7393-275-5

발간일 : 2026-06-18

형식 : 전자책(PDF)

저자 : 김병연 교수

출판사 : 엠북

홈페이지 : <https://www.mbook.kr/>

이메일 : by4782@gmail.com

정가 : 24,000원



소방승진 소방법령4

[목차]

제1권 소방공무원법(p4)

제1장 총칙(p5)

제2장 임용(p7)

제3장 승진(p36)

제4장 교육훈련(p52)

제5장 복제(p69)

제6장 복무(p75)

제7장 징계(p79)

제8장 보칙·벌칙(p95)

제2권 위험물관리법(p100~203)

제1장 총칙(p101)

제2장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p109)

제3장 제조소등 위치·구조 및 설비 기준(p122)

제4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p154)

제5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p167)

제6장 위험물의 운반 등(p186)

제7장 감독 및 조치명령(p190)

제8장 보칙(p192)

제9장 벌칙(p200~203)

제1권 소방공무원법

(이하 법)

[관련 법령]

(대통령령)

소방공무원 임용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무원고충처리규정

(행정안전부령)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용어/약어]

부령은 행정안전부령

청장은 소방청장

시도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실시권자는 시험실시권자(시험실시기관이나 시험실시권 위임 받은 자)

공채는 공개경쟁채용

경채는 경력경쟁채용

소방공채는 소방공무원 공채

간부시험은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심의위는 채용비위심의위원회

[비고]

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

노란색 형광펜은 암기코드 등

검은색은 법

파란색은 대통령령

갈색은 부령

초록색은 최근(1~2년내) 개정된 내용

붉은색은 시행 예정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1장 총칙

1. 목적(1조)

- 소방공무원의 책임과 직무의 중요성,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해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 규정

2. 정의(2조)

가. 임용 신승전파/ 강휴직정/ 강복면해파

- 신규채용, 승진, 전보, 파견
-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 강등, 복직, 면직, 해임, 파면

나. 전보

- 같은 계급과 자격 내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

다. 강임

- 동종 직무 내 하위 직위에 임명

라. 복직

- 휴직/직위해제,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 포함) 중인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

3. 계급 구분(3조) 총정감준/ 정령경위/ 장교사

-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4. 누구든 소방공무원 시험/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 부당한 영향 금지(8조)

5. 시험실시기관(11조)

가.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과 승진시험, 간부시험은 청장이 실시

나. 청장이 인정시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나 소방청 소속기관 장에 위임

- 1) 청장은 시도지사에 시도 소방경 이하 신규채용 시험 실시권 위임 가능
 - 2) 시도지사는 청장에 시도 소방경 이하 신규채용시험 문제출제 의뢰 가능
- 출제 비용 부담 등은 서로 협의

6. 임용시험의 응시 자격 및 방법(12조)

- 신규채용시험, 승진시험, 간부시험 응시 자격, 시험방법 등은 대통령령(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정함

7. 임용후보자명부(13조)

- 가) 시험실시기관 장은
 - 임용권자에 시험 합격자 명단 보내야 함
- 나) 임용권자는
 - 신규채용시험 합격자(간부시험에 합격해 교육훈련 마친 자 포함)과 승진시험 합격자를,
 - 성적순으로 각각 신규채용후보자명부나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
- 다) 유효기간 2년
 - 임용권자는 1년내 연장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2장 임용

법(6~13조) 및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절 총론

1. 정의

가. 소방기관

- 소방청, 시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소방체험관

나. 필수보직기간

- 소방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해야 하는 최소기간

2. 임용권자

가. 대통령

- 청장 제청으로 총리 거쳐 소방령 이상 임용
- 소방총감 임명

나. 청장

- 소방경 이하 임용
-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복직

3. 임용권 일부 위임

가. 대통령

- 청장에 소방청과 소속기관 소방정/소방령,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
- 시도지사에 시도 소속 소방령 이상(단, 소방본부장, 지방소방학교장 제외) 임용권 위임

나. 청장

- 시도지사, 소방청 소속기관장에 위임

- 1) 중앙소방학교장에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장에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령 전보,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권한과 소방경 이하 임용권 위임
- 중앙119구조본부장은 119특수구조대 소방경 이하에 대한 119특수구조대내 전보권을 119특수구조대장에 재 위임

- 2) 시도지사에 다음 위임
- 시도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단, 소방본부장, 지방소방학교장 제외)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복직
 -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 시도 소방경 이하 임용권

다. 시도지사

- 소속기관 장에 위임받은 임용권 일부 재위임
- 지방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장, 소방서장, 119특수대응단장, 소방체험관장에
- 관할구역안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소방체험관 소속 소방경 이하(서울소방학교, 경기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소방령 이하)에 대한 해당 기관내 전보권과 소방위 이하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권한 위임

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시키려면 미리 청장에 보고

마. **청장**은 정원 조정, 소방기관 간 인사교류 등 인사행정 운영상 필요시 임용권 직접 행사

4. 인사기록

- 임용권자(임용권 위임받은 자 포함)은 대통령령(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제2절 소방공무원인사위 (이하 인사위)

1. 설치

-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청장 자문을 위해 소방청에 둔다
- 단, 시도지사가 임용권 행사시 시도에 둔다

2. 구성

- 가) 위원장 포함 5~7명
- 나) 위원장
 - 소방청 인사위는 소방청 차장
 - 시도 인사위는 소방본부장
- 다) 위원은 인사위가 설치된 기관 장이 소속 소방정 이상 중 임명

3. 운영

- 가) 위원장의 직무
 - 사무 총괄, 인사위 대표
 - 위원중 최상위 직위 또는 선임 공무원이 대행
- 나) 회의
 -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됨
 - 재적 2/3 이상 출석, 출석 과반 찬성 의결
- 다) 간사

- 약간인 둠
- 인사위가 설치된 기관 장이 소속공무원 중 임명
- 위원장 명 받아 사무 처리

라) 심의사항의 보고

- 위원장은 지체없이 인사위가 설치된 기관 장에 보고

마) 운영세칙

- 인사위 의결 거쳐 위원장이 정함

4. 기능(심의사항)

- 인사행정 방침, 기준, 기본계획
- 인사 법령 제정/개정, 폐지
- 청장/시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절 신규채용

1. 개요

가. 원칙: 공개경쟁시험

- 단, 소방위는 소방간부후보생(대통령령상 자격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자)로서 교육훈련 마친 자 중 신규채용

나. 경채시험등

1) 경채시험

-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해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 대상 경쟁으로 채용

2) 다수인 대상 시험이 부적당해 대통령령(소방공무원 임용령)이 정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채용시험

2. 경채등에서 임용직위 제한

가. 첫 임용시 시험실시 당시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못함

나. 직무분야를 정해 실시하는 경채시험등으로 다음에 따라 소방령 이하로 선발된 소방공무원 임용시 시험 실시 당시 정한 직무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임용 가능

- 1) 공개경쟁시험이 부적당해 자격증 소지자 임용
- 2)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연구 실적 있거나 소방 전문기술교육 받은 자 임용
- 3) 외국어 능통 자 임용

3. 경채등의 요건 등

가. 퇴직 소방공무원 재임용

- 1)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어 퇴직한 소방공무원이나,
 - 신체/정신상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해 휴직했다가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상 부상/질병 휴직은 5년)내,
 - 퇴직시 재직 계급이나 상응 계급으로 재임용
- 2) 전 재직기관에 전력을 조회해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로 한정

나. 공개경쟁시험이 부적당해 자격증 소지자 임용

- 임용예정분야별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기준에 해당

다.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연구 실적있거나 소방 전문기술교육 받은 자 임용

1) 근무/연구 실적 있는 자

- a)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 관련 직무분야 근무/연구경력 3년,
 - 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특수기술부문 근무 경력자나 국가기관에서 구조업무 관련 근무 경력자를 해당 부문 소방공무원으로 경채등 시는 2년 이상으로서,
 -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연구경력 1년 이상
- b) 임용예정계급 상응 경력 1년 이상인 퇴직 소방공무원
- c) 복무 마친 의무소방원

2) 소방 전문기술교육 받은 자

-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에서 임용예정분야별 교육과정 이수한 자와 법령에 따라 동등 이상 학력 인정되는 자

라. 국가/지방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사법시험/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소방령 이하로 임용

마. 외국어 능통자 임용

- 소방위 이하에 한정
-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 국민이 고등학교나 이에 준하는 학교 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 할 수 있는 수준

바. 경찰을 계급에 상응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

- 경위 이하 경찰로서 최근 5년내 화재감식이나 범죄수사 2년 이상

사. 소방 업무 경험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소방사로 임용

1) 소방서 첫 설치 시/군 또는

- 소방서 미설치 시/군에 119지역대나 119안전센터 첫 설치시 그 관할 시, 읍/면에서
- 이미 5년 이상 의용소방대원으로 계속해 근무하고 있는 자를
- 그 지역 소방서, 119지역대, 119안전센터 첫 설치일 1년내 그 지역 소방공무원으로 임용시로 한정

2) 경채등 가능 인원은 첫 설치 소방서, 119지역대, 119안전센터 공무원 정원 중 소방사 정원의 1/3 내

아. 제한

- 종전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 징계 받은 자는 경채등 못함
- 예외) 징계처분 기록 말소된 자(징계처분 기록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 포함)

4. 채용후보자명부

가) 임용예정계급별로 작성

- 후보자 서류 심사해 임용적격자만 등재
-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본인에 등재여부 통보

나) 유효기간 2년

- 임용권자는 필요시 1년내 연장
- 연장한 때 즉시 본인에 통보

5. 시보임용

가. 임용 등

- 1) 신규채용시 소방장 이하는 6개월, 소방위 이상은 1년간 시보로 임용
- 그 기간 만료 다음 날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
- 2) 시보임용 기간
 -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로 정직처분이나 감봉처분 받은 기간 제외
 - 임용 전 임용과 관련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 받은 기간 포함
- 3) 시보임용 기간 중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하면 면직, 면직 제청 가능

나. 시보임용 면제, 기간 단축

- 1) 시보임용예정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 기간 단축 가능
- 2) 다음은 시보임용 면제
 - 승진 요건 갖춘 소방공무원이 승진예정계급 공채시험에 합격해 임용
 - 정규 소방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당시 계급이나 그 하위 계급으로 임용

다. 시보임용소방공무원등 교육훈련

- 1)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는
 - 시보임용소방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해 소방학교, 각급 공무원교육원, 소방기관에 위탁해 일정 기간 직무 교육훈련(실무수습 포함) 시킴
 - 시보임용예정자가 교육훈련과정 졸업요건 미비시 시보임용 안함
- 2) 교육 받는 시보임용예정자에 예산내 임용예정계급 1호봉 봉급의 80% 지급